

2005. 05. 25. 10:00

제119회 임시회 산건위 제1차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산업건설위원회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I. 검토경과

- 제출일자 : 2005. 5. 19.
- 제출자 : 거창군수
- 회부일자 : 2005. 5. 20.

II.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안

1.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 분	당초예산액	1회추경예산안	증 감	
			증 감 액	비율(%)
합 계	63,450,568	77,958,871	14,508,303	22.87
농 정 과	18,705,194	19,548,147	842,953	4.51
경 제 과	3,581,045	4,702,540	1,121,495	31.32
환경녹지과	11,999,143	13,220,097	1,200,954	10.01
건 설 과	20,780,831	26,058,236	5,277,405	25.40
지역개발과	1,609,822	6,139,167	4,529,345	281.36
농업기술센터	1,781,893	1,825592	43,699	2.45
상하수도사업소	4,992,640	6,485,092	1,492,452	29.89

2. 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당초예산액	1회추경예산안	증 감	
			증감액	비율(%)
합 계	21,074,968	23,979,495	2,904,827	13.78
공 기 업 특별회계	13,293,400	13,490,576	197,476	1.59
농업발전기금	5,724,353	5,730,217	5,864	0.10
농공단지조성	1,363,910	1,490,244	126,334	9.26
주차장관리	640,207	796,869	156,662	24.47
수질개선	0	2,380,911	2,380,911	
주택사업	53,098	90,678	37,580	70.77

III. 검토의견

〈농정과 소관〉

1. 브랜드육 전문점 설치 임차료 1,435,000천원을 목변경 – (p184)

- o 2004.12. 제115회 정례회에 제출된 2005년 당초 예산안에서 브랜드육 전문점 설치사업비가 민간자본적보조 목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심의 과정에서 임차료 과목으로 목 변경토록 수정한 것을 이 번에 시설비로(애우·애도니 야립광고판 설치) 2억원, 민간자본보조(브랜드육 판매장 설치등 9개사업)로 목변경 하는 것으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 소 도축장 HACCP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비 100,000,천원 ————— (p191)

- o 동 건에 대한 시설지원은 2005년 본 예산 심의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 되어 예산요구된 시설사업비의 50% 전액을 반영 하였으나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경제과 소관〉

1. 2005년도 고용촉진 훈련비 24,192천원 ————— (p197)

- o 경기 침체에 따른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이·미용, 조리, 자동차정비등의 분야에 3개월간 교육을 시행하여 실업해소에 기여할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야할 사업으로 검토 되었음.

2. 공공 근로 사업비 74,545천원 ————— (p198)

- o 경기가 회복된다는 여론이 있으나 아직은 실업대책이 이루어져야 함으로 공공근로사업 예산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나 전년도에 미치지 못하게 확보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거창 상설시장 전기공사비 297,840,천원 ————— (p199)

- o 거창 상설시장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현대화 사업을 시행한바 있으나,

의 사용량이 늘어나 증설이 불가피 할 뿐아니라 재해예방차원에서 전기 공사 재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음.

〈환경녹지과 소관〉

1. 유원지 자연발효 화장실 구입비 27,000 천원 —— (p207)
 - 설치된 자연발효 화장실 현황과 금회 설치위치 및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있는 유원지 현황 설명이 필요함.
2. 읍민생활공원 조성 사업 2,000,000천원 ——————(P214)
(계속비사업) 1,530,000천원—— (P313)
 - 변경신청된 계속비사업 조서에는 기승인 된것보다 총사업비는 15억3천만원 증액된 85억 3천만원 이고, 도비보조금은 당초 35억원에서 25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군비 부담액이 당초 승인보다 25억3천만원 증액된 60억3천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있음.
 - 조성 면적은 82,189제곱미터에서 89,166제곱미터로 6977제곱미터 가 증가 하였으며, 도시계획 시설결정 면적은 107,275제곱미터로 스포츠 파크 조성과 중복구간이 있음.
 - 도비감액에 대한 사유와 사업면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소각장 설치 사업 630,000천원
(계속비사업) 7,000,000천원 —————— (p313)
 - 소각장 설치는 2004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당초는 환경관리 공단에 위탁예정 이였으나, 위탁시 위탁비용이 과다하여(비용의8.72%) 설치기간이 길어지고, 무엇보다 소각방식 선정에 군 의견 반영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비로 목 변경하여 군에서 직접 시행코자 계속비 사업으로 변경 하는 것이며,

- 소각장 설치가 자연되므로 매립장이 사용계획 년도 까지 사용이 불가하여 조기 이전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등, 예산 절감방안과 조속히 원하는 방식의 소각로를 설치할수 방법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지역개발과소관〉

1. 군관리계획 수립용역 _____ (p232)

- 치매병원 진입로 설치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수립비 30,000천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음.

【검토내용】

가. 수립중인 군관리계획의 추진일정을 검토하여 계획안에 반영할 경우 새로운 예산 없이 가능하므로 시공중인 치매병원의 준공시점과 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도로공사의 완공시점을 검토하여 문제점 여부 확인이 필요함.

나. 단독 도로시설 계획변경시 경미한 사항으로 군수가 처리할 경우 용역비의 사용 용도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2.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시설비 _____ (P232-233)

- 도비 보조사업 시설비는 거창읍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개설사업비로 3개 지역 3,483,400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음.

【검토내용】

○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장기 미집행 시설이 상당히 많아 민원이 야기되는 실정이므로, 대상사업 결정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사업이 선정된 것인지의 확인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할수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 동산~월천간 상수도 설치공사($L=2.1\text{Km}$) 250,000천원 — (p45)
 - o 월천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연장 2.5Km 관로를 매설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50,000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음.

【검토내용】

- 가. 본 상수도 관로 설치공사의 선행이 어디로 계획된 것인지와 ?
- 나. 시공중인 개봉~월천간 자전거전용도로에 상수도관 매설계획이면 도로 시공계획과 병행해서 추진할 경우 사업시행이 용이할 것으로 검토되어, 금회 추경후 사업발주시 자전거전용도로 공사기간과 상이하여 두 사업을 연개해서 사업을 추진할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